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10. 11.(금)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 병 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다문화 학생의 강점 계발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 다양화가 필요함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다문화교육 정의에“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 또는 모의 언어 및 문화 이해 교육”추가 신설(안 제2조제2항제4호)

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에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계발·운영” 및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추가 신설(안 제10조제2항제7~8호)

다. 업무의 위탁에 “지역 대학” 추가 신설(안 제11조)

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에 “이중언어 교육 중점학교” 신설 (안 제13조제2항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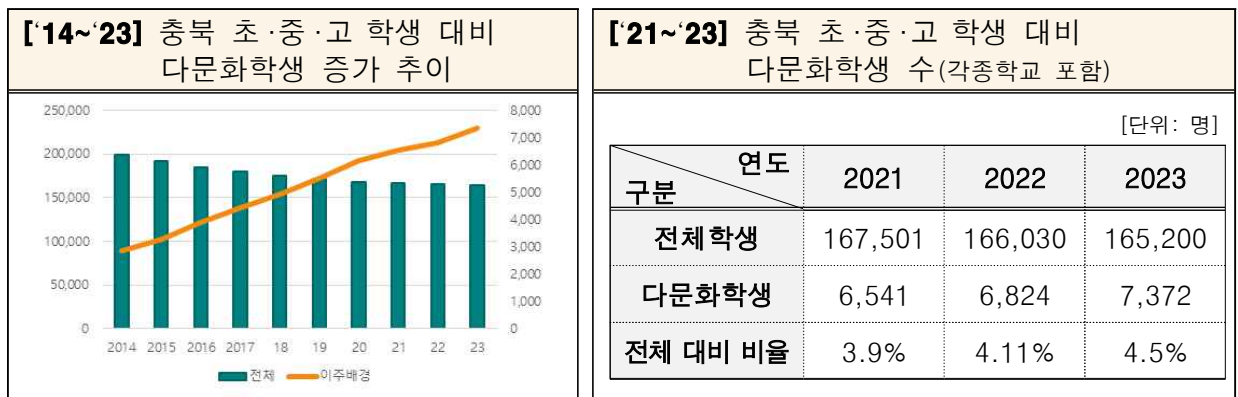
바.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13조의2)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안 이유

- 지난 10년 동안, 충북의 초·중·고 학생은 약 22.8% 감소한^(14년 214,026명 → '23년 165,200명) 반면 다문화 학생은 2014년 2,866명^(전체대비 1.44%)에서 2023년 7,372명^(전체대비 4.5%)으로 지난 10년간 **약 2.5배** 증가 하였음
- ※ 충북 국·공립 유치원 다문화 유아 수 현황: '22년 601명 → '23년 686명, 전년대비 약 14%↑

[통계기준: 매년 4월 1일]



- 초·중·고 각종학교의 외국인 및 중도입국 학생은 지난 5년간 **2.1배** 늘어나고, 국내출생은 **1.2배** 증가하였음

※ 충북 국·공립 유치원 외국인 및 중도입국 유아: '20년 121명→'23년 241명, 1.9배 증가[교육 통계 기준]

- 충북의 다문화 학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출생 학생 5,962명, 중도입국 학생 433명, 외국인 가정 학생 1,663명으로 학생 수로 보면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 국내 출생이 제일 많지만, 중도 입국한 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 수가 국내 출생 대비 50%에 육박함

[단위: 명, 기준: 2023. 4. 1.]

유형	학교급					합계
	유	초	중	고	각종	
국내출생	445	3446	1,346	681	44	5,962
중도입국	16	156	114	54	93	433
외국인가정	225	998	294	145	1	1,663
소계 (구성비율)	686 (8.1%)	4,600 (58.3%)	1,754 (22.0%)	880 (9.8%)	138 (1.8%)	8,058 (100%)

- 다문화 학생들은 전체학생 대비 **학업중단률이 높은 편***이며, 대학진학률은 40.5%에 불과하여 전체(21년, 71.5%)대비 크게 낮은 편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강점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

* '21학년도 학업중단률 비교 : <전체학생> (초) 0.58 (중) 0.54 (고) 1.55
<다문화> (초) **0.68** (중) **0.78** (고) **2.05**

-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보면 국제결혼·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 대응 필요성과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문화 학생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다문화 학생에게 대학졸업시까지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신설했으며, 이중언어, 외국문화이해 등 다문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학교를 운영 할 예정임
- 또한, 2023년 정부 관계기관 합동부처가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도 다문화 청소년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미래인재로 육성하고 사회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족센터에서의 이중언어 교실 운영, 우수학습자 인재 등재를 통한 인력활용,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계획 등이 포함됨

-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학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다문화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및 다문화 학생 계발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다양화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다양한 지역 자원(비영리 법인, 단체, 대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확대와 다문화 학생 증가로 학교 현장이 변화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2항제4호는“다문화교육” 정의 부분에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의 부모 또는 모의 언어와 문화이해 교육을 포함하여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2항의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확대 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부모 국가 이해도가 제고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제2항제7~8호에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강점 계발을 위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실 운영 및 우수인재 DB 구축 예정으로 다문화교육지원 센터 업무 중 이중언어¹⁾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추가한 것이며, 본 조항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

1) 한국어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 또는 모의 언어

습권 및 진로 진학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에는 업무 위탁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만 되어 있던 것을 지역대학까지 확대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제2항제3호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에 이중언어 중점학교를 추가 신설하여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안 제13조의2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중언어를 포함한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교육 교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교육권 보장과 미래 다문화사회를 대비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화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것으로 이중언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그들의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킬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개별 재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교 및 사회에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촉진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출신국과 연령층이 다양함에 따라 다문화언어 강사를 확보 단계에 지원교육, 유관기관 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 지속성과 연계성이 확보 된 지원방안이 필요함

- 특히, 유아교육 단계서부터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보완 추진 하는 것이 중요함